투자 위험 등급 3 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 30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 30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 30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E1496)
2. 집합투자업자 명칭: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6 년 4 월 20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 년 10 월 30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2023 년 4 월 2 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본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E1496**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E1530
수수료선취-온라인 (Ae)	E153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E153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E15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E15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E15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E15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E15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E15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E15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E15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E154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E154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E15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E1544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을 내리기 전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환매)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환매)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모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유비에이엠 30 글로벌 리더스 주식(UBAM – 30 Global Leaders Equity)'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동성 위험과 연관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므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이 확대될 경우 환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6.04.20)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E1496)

투자 위험 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NH-Amundi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80% 이상을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집중투자 위험, 재간접 투자 위험,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80% 이상을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 30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유비에이엠 30 글로벌 리더스 주식(UBAM - 30 Global Leaders Equity) 펀드**(이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펀드명	UBAM - 30 Global Leaders Equity (유비에이엠 30 글로벌 리더스 주식)
펀드 종류	증권(주식형)
집합투자업자	UBP Asset Management (Europe) S.A.
하위 집합투자업자	Union Bancaire Privée, UBP SA, Geneva -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50 년 역사의 HNW(High Net Worth) 전문 자산운용사로, '22 년말 기준 약 1,720 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정일	2013.01.17
등록소재지/ 감독기관	Luxembourg(룩셈부르크) / CSSF *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 룩셈부르크 금융감독기관
비교지수	MSCI ACWI Net TR Index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이 펀드는 글로벌 대형주 30 종목에 투자합니다. 섹터/국가 배분보다는 높고 안정적인 현금흐름투자수익률(CFROI, Cash-flow return on investment)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선별하여, 장기 보유(연평균 30% 수준의 턴오버 목표)함으로써 변동성이 높은 기간에는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고, 상승장에서는 시장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합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0.96	0.60	0.88	1.9303	296	498	708	1,153	2,4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26	0.90	1.2	2.2305	229	466	712	1,231	2,708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0.66	0.30	0.58	1.6300	216	389	569	953	2,0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81	0.45	0.74	1.7804	182	373	571	992	2,208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합성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보수(혹은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48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0.97]%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5.04.21 ~ 26.04.20	24.04.21 ~ 26.04.20	23.04.21 ~ 26.04.2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2023.04.20	11.30	3.29	5.52		5.52
비교지수 (%)		33.54	19.59	18.02		18.01
수익률 변동성(%)		9.13	10.13	9.78		9.78

(주 1) 비교지수: MSCI ACWI Net TR Index(USD) 90% + 콜금리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26.10.0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개,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정승호	1975	책임 (본부장)	21	9,083	-9.49	-10.36	8.37	11.08	18년 9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주식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 시)에 담당 본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모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재간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상 글로벌 대형주 30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는 펀드들에 비해 위험분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한적인 위험분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한 개별 종목의 추이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자산 가치가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의해 크게 하락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분산투자된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당국가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와의 성과차이 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는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유동성자산에 투자됩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므로 국내 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미국달러화(USD)로 투자된 자산에 대해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하지 않는 해당 외화표시자산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해당 통화의 일시적 또는 장기적 거래불능 등 환헤지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율변동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자산 가격(가치)의 변동,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헤지 비율이 변동되거나, 환헤지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실행이 환율변동위험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위험 관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자산에 투자하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는 모투자신탁 투자에 따르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예: 선물 또는Forward계약 등)을 이용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편입된 외화표시자산 중 미국달러화(USD)로 투자된 자산에 대해 70±30% 수준입니다.** ※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로 해외통화로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자산가치의 등락 외에도 해외통화 가치의 등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해외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해외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로 인한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 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소득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위험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17 시 이전: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 시 경과 후: 4 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 17 시 이전: 4 영업일 기준가 8 영업일 지급 • 17 시 경과 후: 5 영업일 기준가 9 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매일 게시 및 공시	

<table>
<tr><td></td><td>-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전자 공시</td></tr>
<tr><td>과세</td><td>
<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 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NH-Amundi 자산운용㈜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nh-amundi.com)</td></tr>
<tr><td>모집기간</td><td>추가형으로 계속 모집가능 | 모집. 매출 총액 | 10 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 년 10 월 30 일 | 존속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참고</td></tr>
<tr><td>참조</td><td>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주요업무),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67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펀드) 특징</th></tr>
<tr><td rowspan="3">판매수수료</td><td>수수료 선취</td><td>펀드 가입시점(혹은 추가불입시점)에 판매수수료(판매사에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일시에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로 인해 펀드가입기간동안 판매보수(투자금액에서 매일계상되는 보수)가 수수료미징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총비용이 수수료미징구형보다 낮아지게 되어 장기투자에 적합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미징구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 년 11 개월입니다.(오프라인 기준)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 년 11 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td></tr>
<tr><td>수수료 미징구</td><td>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선취형보다 낮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 년 11 개월입니다.(오프라인 기준)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 년 11 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td></tr>
<tr><td>수수료 후취</td><td>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수수료는 수수료선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며,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 이후 환매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형 > 수수료후취형</td></tr>
</table>
</td></tr>
</table>

			* 동 펀드의 수수료후취형은 3 년이상 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CDSC)	수수료미징구형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펀드의 투자기간(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자동 전환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이연판매보수(CDSC: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투자기간 경과(1 년 단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C1--> C2--> C3 --> C4[--> C5])로 전환되며 펀드 가입이후 4[5]년부터 C4[C5]의 판매보수가 적용
		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펀드에 가입할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에서 정한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가입하는 고액투자자(법인 or 개인), 법에서 정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 입니다. * 고액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펀드별 가입자격을 참고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nh-amundi.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nh-amundi.com)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2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2
3. 모집예정금액 12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3
5. 인수에 관한 사항 13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3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4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5
4. 집합투자업자 15
5. 운용전문인력 15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6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20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1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29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35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40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45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7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51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56
1. 재무정보 5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6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62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67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67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69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69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70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71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71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72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72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75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76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80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81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81
용 어 풀 이 82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E1496**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E1530
수수료선취-온라인 (Ae)	E153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E153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E15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E15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E15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E15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E15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E15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E15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E15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E154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E154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E15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E154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최초설정일 기준 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2023년 4월 2일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h-amundi.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를 통하여 모집 및 판매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E1496**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E1530
수수료선취-온라인 (Ae)	E153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E153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E15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E15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E15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E15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E15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E15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E15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E15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E154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E154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E15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E154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3.04.20	최초 설정
2024.05.24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24.03.01시행)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2024.01.25) 반영
2025.06.25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종류 S 등 수익증권 관련 설명) 개정사항 반영 -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변경 반영 - 채권평가회사 추가(이지자산평가) - 설정 후 6개월 경과에 따른 관련 문구 삭제
2026.05.07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VaR 기준 22.44%, 2등급 → 3등급)

2026.10.30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능규 → 정승호)

주1) 상기 연혁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 (Tel: 02-368-3600, www.nh-amundi.com)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26.10.01 기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정승호	1975	본부장	18년 9개월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2021.10. ~ 현재 NH-Amundi자산운용 글로벌주식본부 - 2015.05. ~ 2021.10. KB자산운용 글로벌에쿼티팀 - 2008.01 ~ 2015.04. 삼성자산운용ETF운용팀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주식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담당 본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6.10.01 기준)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좌)**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정승호	21	9,083	-9.49	-10.36	8.37	11.08

주1)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기구 분류상 2차, 3차 분류기준)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본부운용이지만,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상기 책임운용인력이 운용한 펀드의 평균운용성과를 기재하였습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과 동일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책임운용역	책임운용역
2026.10.30	이능규	정승호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주2)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3단계 구분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3단계 구분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제한없음(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선취-온라인 (Ae)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온라인 (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최초 가입시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최초 가입시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보유한 자,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주1) 이 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3단계 구분(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펀드특성)에 따른 종류형 펀드의 대표적인 차이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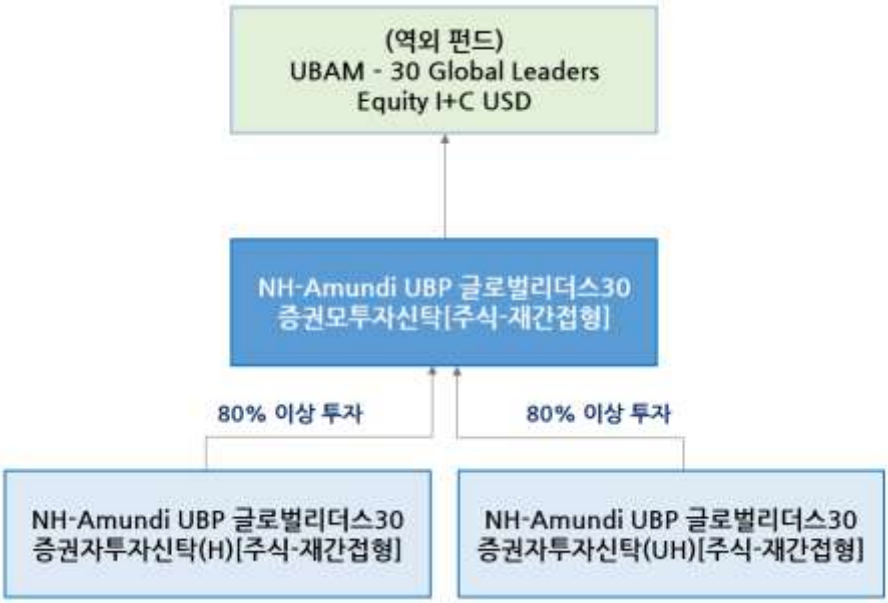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펀드)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펀드 가입시점(혹은 추가불입시점)에 판매수수료(판매사에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일시에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로 인해 펀드가입기간동안 판매보수(투자금액에서 매일계상되는 보수)가 수수료미징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총비용이 수수료미징구형보다 낮아지게 되어 장기투자에 적합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미징구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 년 11 개월입니다.(오프라인 기준)**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 년 11 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
	수수료 미징구	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선취형보다 낮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 년 11 개월입니다.(오프라인 기준)**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 년 11 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
	수수료 후취	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수수료는 수수료선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며,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 이후 환매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형 > 수수료후취형 * 동 펀드의 수수료후취형은 3 년이상 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CDSC)	수수료미징구형 클래스(종류형편드)로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펀드의 투자기간(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자동 전환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이연판매보수(CDSC: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투자기간 경과(1 년 단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C1--> C2--> C3--> C4[--> C5])로 전환되며 펀드 가입이후 4[5]년부터 C4[C5]의 판매보수가 적용
	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펀드에 가입할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에서 정한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가입하는 고액투자자(법인 or 개인), 법에서 정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 입니다. * 고액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펀드별 가입자격을 참고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간접형 구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유럽연합(EU)의 UCITS 규정(UCITS requirement)에 의거하여 역외지역인 룩셈부르크에 등록된 'UBAM - 30 Global Leaders Equity'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은 투자대상 하위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로 **유비에이엠 30 글로벌 리더스 주식(UBAM - 30 Global Leaders Equity) 펀드**(이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를 선정하였습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30개의 주요 글로벌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지속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선별·보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선정기준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UBP Asset Management

(Europe) S.A.) 및 하위집합투자업자(Union Bancaire Privée, UBP SA, Geneva)의 글로벌 주식 운용 경험과 운용팀의 역량,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규모, 운용성과, 운용지표,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펀드운영(Operation) 프로세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NH-Amundi자산운용은 이메일, 컨퍼런스콜, 화상회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팀과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였습니다. 투자 프로세스, 운용성과 및 운용계획, 위험관리 프로세스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증하였으며, 성과분석 및 운용전망 등에 대해 향후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80% 이상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 30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20% 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 등이나 주식・채권・통화 등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④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거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투자대상 ①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대상 ② 내지 ③,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경우 초과일부터 6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 및 법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②	주식	40% 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채권	40% 미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 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자산유동화증권	4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어음등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⑥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 등이나 주식・채권・통화 등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⑦	환매조건부매도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⑧	증권의 대여[주3)]	증권 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⑨	증권의 차입[주4)]	2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차입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⑪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 내지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투자대상 ① 내지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대상 ⑥ 내지 ⑨,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경우 초과일부터 6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및 나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 및 법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신탁계약서 제17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증권의 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기타 운용방법(증권의 대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구분	투자제한 사항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장외파생상품 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서 제24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신탁계약서 제36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③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으로 정하는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습니다.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 제한]

구분	투자제한 사항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종목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투자신탁(사모투자신탁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투자신탁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장외파생상품 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서 제24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신탁계약서 제36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③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으로 정하는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습니다.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을 유비에이엠 30 글로벌 리더스 주식 (UBAM - 30 Global Leaders Equity) 펀드(이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므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해당 투자신탁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실사(Due Diligence)등에 대한 정보는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전략, 설립국가,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모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79조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관련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참조하기 바랍니다.

주2) 모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시장 상황, 해외 집합투자업자의 상황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교체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80% 이상을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MSCI ACWI Net TR Index(USD) 90% + 콜금리 10%
- 동 지수는 글로벌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실적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이 투자신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비교지수가 등장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지수의 변경을 위하여 이 투자신탁은 변경등록을 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MSCI ACWI 지수란?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네셔널(MSCI)이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글로벌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이 MSCI ACWI 는 23 개국의 선진국 주식시장과 24 개의 신흥국 주식시장의 대형주와 중형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2022.5 월기준) 11 개 섹터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주식시장 시총(유동주식수 기준(a free float – adjusted market cap.))의 85%를 설명(커버)하는 글로벌 대표 주식지수 입니다. 지수는 지역, 시총규모, 섹터,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MSCI 의 고유 방법론(MSCI's Global Investable Market Index Methodology)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지수 확인: https://www.msci.com/acwi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유비에이엠 30 글로벌 리더스 주식(UBAM - 30 Global Leaders Equity) 펀드**(이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향후 3~5년간 높은 수익 및 성장 기회를 갖춘 30개의 글로벌 선도 기업*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선도(Leading)기업 : 시장점유율, 혁신역량, 브랜드 인지도 및 우수한 경영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시장 선도 지위를 점한 기업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운용 프로세스 :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결합한 상향식 투자(Bottom-up)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포트폴리오 특성 :
  - 30종목에 집중투자 : UBP 리서치 분석에 따라,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한 리스크 감소에 효과적인 종목수 30개를 선정하여 집중투자
  - 장기적 관점의 종목 선택 : 특정 섹터/국가/마켓 타이밍에 한정하지 않고, 상승장에서의 상승세, 하락장에서의 리스크 방어가 기대되는 우수한 기업을 잦은 매매 없이 장기간 보유(연평균 30% 수준의 턴오버)
  - CFROI 지표를 활용한 기업 발굴 :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되고 회계상 왜곡을 반영하지 않는 'CFROI(현금흐름투자수익률, Cash-flow return on investment)'을 지표로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자본비용 이하 수익이 발생하는 쇠퇴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시장대비 초과성과 및 낮은 변동성 추구
  - 투자 프로세스 내 ESG 기준 통합 : 기후변화, ESG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종목 선정시 ESG 등급을 고려하고, 비교지수(MSCI AC World Net Return Index) 대비 높은 ESG 점수 및 낮은 탄소배출량 수준을 유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펀드명	UBAM - 30 Global Leaders Equity (유비에이엠 30 글로벌 리더스 주식) [Class: I+C USD / ISIN: LU2072850139)
펀드 종류	증권(주식형)
집합투자업자	UBP Asset Management (Europe) S.A.
하위집합투자업자	Union Bancaire Privée, UBP SA, Geneva
설정일	2013.01.17
규모	약 16.15 억 USD (2023.03.06 기준)
등록소재지/ 감독기관	Luxembourg(룩셈부르크) / CSSF *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 룩셈부르크 금융감독기관
운용역	Martin Moeller - 생년 : 1973 - 직위 : Swiss & Global Equity팀 팀장
구조	유비에이엠(UBAM SICAV) 펀드의 하위펀드 - UBAM SICAV 은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변동자본 투자회사(SICAV)로 설립된 개방형 투자 회사로, 개별적으로 분리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위펀드로 구성된 "엄브렐러형(전환형)"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기준통화	USD(미국 달러)
비교지수	MSCI ACWI Net TR Index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이 펀드는 글로벌 대형주 30 종목에 투자합니다. 섹터/국가 배분보다는 높고 안정적인 현금흐름투자수익률(CFROI, Cash-flow return on investment)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선별하여, 장기 보유(연평균 30% 수준의 턴오버 목표)함으로써 변동성이 높은 기간에는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고, 상승장에서는 시장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합니다. 또한, 투자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ESG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이 펀드는 ESG 점수*1 가 비교지수(MSCI AC World Net Return Index)의 ESG 점수를 상회하고, 투자 환경에 비해 낮은 탄소 배출량을 유지하도록 운용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해 ESG 분석을 실행하며, MSCI ESG 리서치 등 ESG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펀드 운용역/부서의 자체적인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 펀드는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2) 기준 "제 8 조(Article 8)펀드"에 해당합니다. 이 펀드는 클래스간 헤지 목적 외에는 파생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1 ESG점수: MSCI ESG 점수를 근거로 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 요인에 따른 장기적인 리스크 및 성장기회에 대한 기업 역량을 평가 *2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분류: 2021.3.10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로, 금융기관의 투자·금융상품 등을 공시할 때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SFDR에 따라 'ESG 리스크가 투자 결정 또는 수익과 관련이 없는 펀드(제6조),' '환경 또는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펀드(제8조),' '지속가능한 펀드(제9조)' 3개로 구분 됩니다.
주요 투자위험	- 집중투자 위험:

	이 펀드는 글로벌 대형주 30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보다 분산투자된 다른 펀드에 비해 높은 변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의해 크게 하락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분산투자된 펀드에 비해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역 위험: 펀드가 특정 국가 및 지역에 집중 투자할 경우, 펀드성과는 해당 국가 및 지역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국가 또는 연관되는 국가 및 지역의 불리한 경제상황, 정치 환경 및 법적 또는 규제 변화, 또는 이러한 국가 및 지역에 기반을 두거나 영업을 행하는 기업의 성과는 펀드성과 또는 펀드가 보유한 주식 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가 투자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발행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펀드가 받을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신흥국 위험: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큰 정치적 상황 및 환경, 높은 물가상승률, 최근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투자와 환율 하락과 관련된 위험, 미성숙한 금융시장, 법률 불안정 및 권리 이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어려움, 높은 세금 비용, 국제 기준과 상이한 법률 체계 및 해석 등 높은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 및 세금 관련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자산의 이체, 평가, 청산, 회계처리 및 증권 등록절차, 증권의 보관 및 거래 청산을 위한 시스템 부족 등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펀드 및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반 시장 위험: 펀드가 증권이나 기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부 불합리한 요소에 기인한 다양한 경제적 및 정치적 상황, 증권시장과 투자심리의 동향과 추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현저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증권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펀드의 투자자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환율 변동 위험: 펀드가 직·간접적으로 기준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펀드의 주식 클래스가 펀드의 기준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될 경우, 외화 포지션이 헤지되지 않은 경우, 또는 관련 외환관리규정에 의한 변동이 있을 경우,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위험에 노출됩니다. 펀드의 기준통화 대비 외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외화 표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펀드 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속가능성 위험: 이 펀드는 ESG 기준을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투자자산 선정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 환경 변화로 인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 수익성, 평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공급망 관리, 제조물 책임 또는 기업 윤리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펀드의 성과는 해당 투자자산이 시장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대비 하회할 수 있으며, 투자자산 선정시 ESG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펀드들에 비하여 미진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ESG 분석을 실행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 및 정보가 불완전 또는 부정확하거나 입수가능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이나 발행인을 잘못 평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보관위험: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산의 현지 시장에서 안전한 자산보관을 목적으로 하위보관회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보관 및 결제 시스템이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은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자산은 보관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보관회사의 파산, 과실, 고의적 위법행위 또는 사해적 행위로 인해 펀드가 보관중인 투자자산에 일부 또는 전부 접근할 수 없을 경우(법령의 소급적용 및 사기행위 또는 소유권 부정 등기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 펀드는 해당 자산을 회복하는 데에 오랜 시간을 소요하거나,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펀드에 상당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투자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위험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시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관련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③ 비교지수: MSCI ACWI Net TR Index(KRW) 90% + 콜금리 10%

(2) 위험 관리

① 위험관리방안

-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수행
- 위험요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
  (1) 시장위험: 금리, 환율 등 시장 변동으로 투자자산 가치감소위험
  (2) 신용위험: 채무자(계약상대방)의 채무(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위험
  (3) 유동성 위험: 투자자산의 유동성부족으로 환매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위험

② 환위험 관리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자산에 투자하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는 모투자신탁 투자에 따르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예: 선물 또는 Forward 계약 등)을 이용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편입된 외화표시자산 중 미국달러화(USD)로 투자된 자산에 대해 70±30% 수준입니다. 미국달러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거래되는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환헤지란?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로 해외통화로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자산가치의 등락 외에도 해외통화 가치의 등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해외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해외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로 인한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 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자산 가격(가치)의 변동,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헤지 비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목표 환헤지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환헤지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시장상황 및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목표 환헤지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향후 투자대상국가의 통화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외화표시자산의 환헤지 수단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적합한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에 환헤지 전략은 수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전략이 변동되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했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환헤지는 선물환 계약 및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표시자산(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에 한함)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위험을 제거하고자 실행됩니다. 다만, 환헤지를 실행한다고 하여 환율변동위험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투자자는 환헤지가 정확한 헤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환헤지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 환헤지에 의해 발생한 모든 추가적인 비용, 수익, 손실은 이 투자신탁에 귀속되며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③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위험 관리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관리를 위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고서 및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을 월간 단위로 제공받고 검토합니다. 운용보고서에는 펀드 성과, 자산구성현황, 시장 분석, 성과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추가적인 운용정보가 필요할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역/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유동성리스크 위험 및 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① '유동성리스크'란 시장에서 거래부족이나 장애 등으로 집합투자재산 등을 정상적으로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가격 변동을 초래할 위험과 만기 해지청구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위험을 말합니다.

②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위험을 분류,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리스크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유동성위험 분류
  - 대규모 자금유출로 인한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 자금의 과부족 해소를 위한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
- 집합투자재산의 유동성위험 관리방안
  - 펀드 내 현금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상시적인 자금유출과 자금의 과부족을 사전에 대비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

③ 비상조치계획

위기대응 업무 프로세스 지침 등에 의거, 사전에 수립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위기 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I. 위기예방	리스크 지표 별 정기 모니터링, 주기적 포트폴리오 분석 및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등 시행
II. 위기인지	위기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III. 위기대응	· 대표이사, 부사장 및 각 주요 부서장들로 구성된 위기대응위원회를 운영 · 위기대응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필요시 유동성 관련 비상 대책 시행 · 기타 각 부서별 업무분장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위기대응 조치 시행

※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모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유비에이엠 30 글로벌 리더스 주식 (UBAM - 30 Global Leaders Equity) 펀드(이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투자신탁의 운용성과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전체(또는 일부)는 외국통화로 거래되므로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상 글로벌 대형주 30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는 펀드들에 비해 위험분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한적인 위험분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한 개별 종목의 추이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자산 가치가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의해 크게 하락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분산투자된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당국가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므로 국내 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미국달러화(USD)로 투자된 자산에 대해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하지 않는 해당 외화표시자산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해당 통화의 일시적 또는 장기적 거래불능 등 환헤지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율변동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자산 가격(가치)의 변동,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헤지 비율이 변동되거나, 환헤지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실행이 환율변동위험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위험 관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높은 위험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소득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와의 성과차이 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는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유동성자산에 투자됩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투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며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지 국가 위험	룩셈부르크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지가 해외인 경우, 국내 금융 감독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제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인력의 교체, 내부 정책에 따른 정보의 비접근성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손실을 입거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청산이 결정될 경우 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ESG기준을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투자자산 선정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 환경 변화로 인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 수익성, 평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공급망 관리, 제조물 책임 또는 기업 윤리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는 해당 투자자산이 시장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대비 하회할 수 있으며, 투자자산 선정시 ESG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펀드들에 비하여 미진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ESG분석을 실행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 및 정보가 불완전 또는 부정확하거나 입수가능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이나 발행인을 잘못 평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국내외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실무상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고 환매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기간 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개장 및 폐장시각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국내투자보다 높은 업무처리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신탁 소규모 위험	집합투자기구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자산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위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이익 증대 등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① 다음과 각 호의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의 해지)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 년(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 년)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특히, 상기 3, 4 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의무 해지)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세금 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 상기의 투자위험은 작성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시장위험(VaR)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최대손실예상액(VaR)은 **22.44%**로 시장위험 등급기준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위험등급	변경사유
2026.05.07	2등급 → 3등급	- 변동성(최대손실예상액)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변경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최대손실예상액(VaR)이 30%이하 20% 초과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상기 투자위험등급은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매결산시마다 최대손실예상액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에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제한없음(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선취-온라인 (Ae)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온라인 (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최초 가입시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최초 가입시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보유한 자,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3)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17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17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로부터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17시 이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17시 이전에 매입청구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법, 미국 내국세법(US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또는 미국 연방세법(US federal income tax law)에 따라 정의된 자(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한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non-US) 법인(아래 5호의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 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 년 동안 183 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 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 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②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③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④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 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⑤ 미국인(위 제 1 호에서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 IRC Section 1471 내지 1474 에 따른 FATCA 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기타 국가의 정부간 체결되는 국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이하 "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가 1 인 이상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Pass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이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나 적극적 비금융외국법인(IGA 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이 아닌 비미국(non-US) 비금융법인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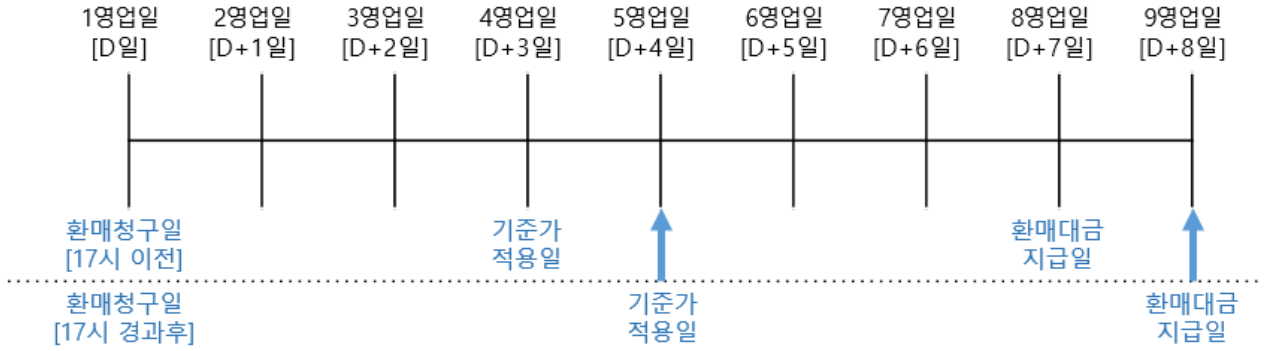
구분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	-	○

※ 환매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 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17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5 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 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투자신탁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17시 이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17시 이전 환매청구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 사유

- 집합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h-amundi.com)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게시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와 주당 발행가격 및 환매가격은 평가일(룩셈부르크의 정규 은행 영업일) 다음 영업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통화로 매일 산정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일에 현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가치)를 해당 평가시점의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정하며, 펀드의 기준통화의 백단위 근사값으로 전환합니다. * 상기 내용은 국내 등록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최근 정정신고일 기준)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및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해외장내파생상품	경우 전날의 가격)
채무증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관련법령에 따라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자가 제공한 가격 (1) 채권평가회사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3) 신용평가업자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5)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6) (1)~(5)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7) (1)~(6)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환매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	-	-	-
부과시기	매입시	환매시	전환시	환매시

주1) 선취,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총보수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0.33	0.60	0.02	0.01	0.96	0.8800	0.0003	0.9603	1.9303	0.0000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33	0.30	0.02	0.01	0.66	0.5800	0.0000	0.6600	1.6300	0.00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33	0.33	0.02	0.01	0.69	-	0.0005	0.6905	1.6605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33	0.90	0.02	0.01	1.26	1.2000	0.0005	1.2605	2.2305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0.33	0.45	0.02	0.01	0.81	0.7400	0.0004	0.8104	1.7804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0.33	0.50	0.02	0.01	0.86	-	0.0005	0.8605	1.8305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33	0.01	0.02	0.01	0.37	-	0.0005	0.3705	1.3405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33	0.00	0.02	0.01	0.36	-	0.0005	0.3605	1.3305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0.33	0.70	0.02	0.01	1.06	-	0.0005	1.0605	2.0305	0.0000

(C-P1(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0.33	0.35	0.02	0.01	0.71	-	0.0005	0.7105	1.6805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0.33	0.68	0.02	0.01	1.04	-	0.0005	1.0405	2.0105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0.33	0.34	0.02	0.01	0.70	-	0.0004	0.7004	1.6704	0.000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33	0.27	0.02	0.01	0.63	-	0.0005	0.6305	1.6005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0.33	0.21	0.02	0.01	0.57	-	0.0005	0.5705	1.5405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0.33	0.20	0.02	0.01	0.56	-	0.0005	0.5605	1.5305	0.0000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해지 시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며,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상기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한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 중 가장 큰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4.20 ~ 2026.04.19]

주2)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성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Repo·콜·대차 또는 대주·현금 등 중개수수료 등 (다만,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 수수료 계약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환급되는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금융비용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 등	-

- 상기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한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 중 가장 큰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4.20 ~ 2026.04.19]

- 상기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4.20 ~ 2026.04.19]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0.97]%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모투자신탁 총보수·비용 중 가장 큰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작성기준일의 전월말 기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예시>

(단위 : 천원)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97	298	402	624	1,26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96	498	708	1,153	2,433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7	187	260	416	86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16	389	569	953	2,06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0	194	270	432	903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19	395	578	969	2,1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9	263	402	696	1,53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29	466	712	1,231	2,7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3	170	260	451	1,00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82	373	571	992	2,2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8	180	276	479	1,06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88	383	586	1,019	2,2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38	78	119	208	46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37	281	432	753	1,6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37	76	116	203	45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36	279	428	748	1,6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연금저축))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9	222	339	588	1,30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08	424	649	1,125	2,48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연금저축))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3	149	228	397	88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72	352	539	938	2,0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7	217	333	577	1,27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06	420	643	1,115	2,4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2	147	225	391	873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71	350	536	933	2,08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5	132	202	353	78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4	335	514	895	2,0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1(연금저축))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8	120	183	319	71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8	323	495	862	1,9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7	117	180	314	70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7	321	492	857	1,92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 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Class A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1.0%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주3) Class Ae 및 Class AG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0.5%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주4) Class S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5) Class A와 Class C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 11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주6) Class Ae 와 Class Ce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 11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종료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수익자는 ①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③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2)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서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신탁계약서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가능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절차가 없으며,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펀드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 1,800 만원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1.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 년 이하인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2.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분리과세한도	- 연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 연 1,500 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 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66 조제 1 항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다만,「소득세법」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3기(2025.04.20 - 2026.04.19)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2기(2024.04.20 - 2025.04.19)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기(2023.04.20 - 2024.04.19)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1) 요약재무정보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3기	제 2기	제 1기
	(2026.04.19)	(2025.04.19)	(2024.04.19)
운용자산	74,655,911	113,944,776	96,463,916
증권	71,346,520	103,084,475	95,382,412
파생상품	-505,757	1,568,074	-2,937,402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815,148	9,292,227	4,018,90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4,109	9,224	1,506,063
자산총계	74,660,020	113,954,000	97,969,97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0	0	0
부채총계	0	0	0
원본	62,288,068	106,393,645	88,291,747
수익조정금	-7,882,142	2,282,794	7,406,446
이익잉여금	20,254,094	5,277,561	2,271,786
자본총계	74,660,020	113,954,000	97,969,979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3기	제 2기	제 1기
	(2025.04.20 - 2026.04.19)	(2024.04.20 - 2025.04.19)	(2023.04.20 - 2024.04.19)
운용수익	14,485,852	-4,949,261	2,296,156
이자수익	128,614	169,124	346,661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4,357,238	-5,118,385	1,949,495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490	470	24,37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490	470	24,370
당기순이익	14,485,362	-4,949,731	2,271,786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주식의 투자 비중만을 감안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주 2) "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5.04.20 - 2026.04.19)			전기(2024.04.20 - 2025.04.19)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합계	0	0	0	0	0	0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상기의 거래비용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	0	0	0	0	32.18

(주 1)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기준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분기영업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분기별 누적 평균 매매회전율을 공시한 자료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주식의 투자 비중만을 감안하여 산출되었습니다.

2) 재무상태표

투자신탁명 :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단위:원]**

과 목	제3기(2026.04.19)		제2기(2025.04.19)		제1기(2024.04.19)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3,815,148		9,292,227		4,018,906
1. 현금및현금성자산	3,815,148		9,292,227		4,018,906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71,346,520		103,084,475		95,382,412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71,346,520		103,084,475		95,382,412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505,757		1,568,074		-2,937,402
1. 파생상품	-505,757		1,568,074		-2,937,402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4,109		9,224		1,506,063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109		9,224		6,063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1,500,000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74,660,020		113,954,000		97,969,979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1. 원 본	62,288,068		106,393,645		88,291,747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2,371,952		7,560,355		9,678,232	
(발행좌수 당기: 62,288,068 좌	이익잉여금	20,254,094		5,277,561		2,271,786
전기: 106,393,645 좌	수익조정금	-7,882,142		2,282,794		7,406,446
전전기: 88,291,747 좌)						
(기준가격 당기: 1,197.28 원						
전기: 1,069.33 원						
전전기: 1,108.23 원)						
자 본 총 계		74,660,020		113,954,000		97,969,97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4,660,020		113,954,000		97,969,979

3) 손익계산서

투자신탁명 :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단위:원]**

과 목	제3기(2025.04.20-2026.04.19)		제2기(2024.04.20-2025.04.19)		제1기(2023.04.20-2024.04.19)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28,614		169,124		346,661
1. 이 자 수 익	128,614		169,124		346,661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4,607,610		13,728,772		99,005,51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310,231				9,219,550	
5. 외환거래/평가차익	3,765,493		7,084,198		70,158,798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5,531,886		6,644,574		19,627,162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0,250,372		18,847,157		97,056,015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7,288,669			
5. 외환거래/평가차손	10,250,372		11,558,488		65,463,831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31,592,184	
운 용 비 용		490		470		24,370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490		470		24,37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4,485,362		-4,949,731		2,271,786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232554363		-0.046522807		0.02573044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20 - 2026.04.19	1	1	1	1	1	1	1	1
2024.04.20 - 2025.04.19	1	1	1	1	0	0	1	1
2023.04.20 - 2024.04.19	0	0	20	19	19	19	1	1

(주1) 2025.04.20 - 2026.04.1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92좌/350원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20 - 2026.04.19	0	0	0	0	0	0	0	0
2024.04.20 - 2025.04.19	0	0	0	0	0	0	0	0
2023.04.20 - 2024.04.19	0	0	1	1	1	1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수수료선취-온라인(A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20 - 2026.04.19	0	0	0	0	0	0	0	0
2024.04.20 - 2025.04.19	0	0	0	0	0	0	0	0
2023.04.20 - 2024.04.19	0	0	2	2	2	2	0	0

(주1) 2025.04.20 - 2026.04.1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96좌/350원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20 - 2026.04.19	0	0	0	0	0	0	0	0
2024.04.20 - 2025.04.19	0	0	0	0	0	0	0	0
2023.04.20 - 2024.04.19	0	0	0	0	0	0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4.20 - 2024.04.19	0	0	15	15	15	15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연금저축))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20 - 2026.04.19	0	0	0	0	0	0	0	0
2024.04.20 - 2025.04.19	0	0	0	0	0	0	0	0
2023.04.20 - 2024.04.19	0	0	2	2	1	1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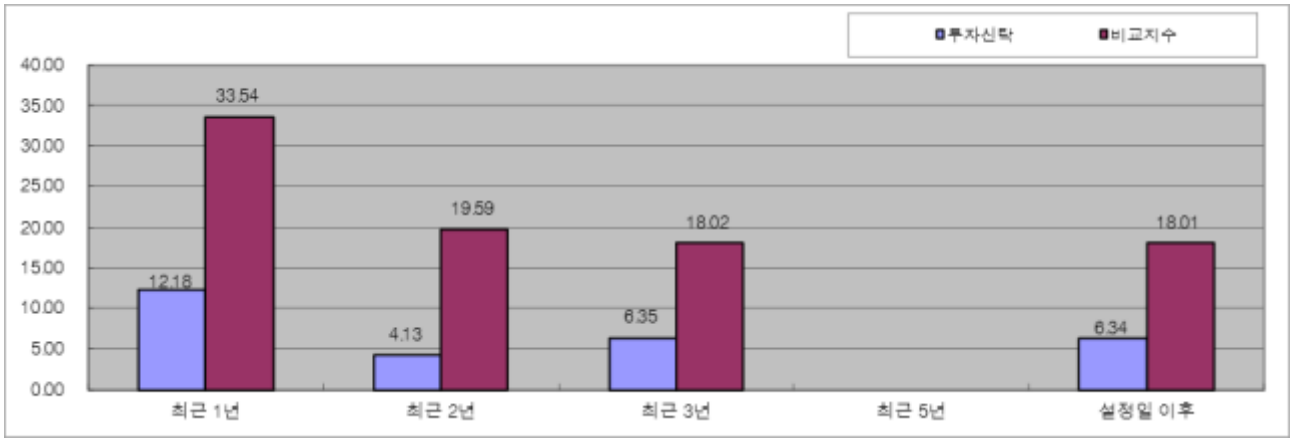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4.20 - 2026.04.19	0	0	0	0	0	0	0	0
2024.04.20 - 2025.04.19	0	0	0	0	0	0	0	0
2023.04.20 - 2024.04.19	0	0	1	1	0	0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04.21 ~ 26.04.20	24.04.21 ~ 26.04.20	23.04.21 ~ 26.04.20	-	23.04.20 ~ 26.04.20
투자신탁	12.18	4.13	6.35		6.34
비교지수	33.54	19.59	18.02		18.01
수익률변동성(%)	9.13	10.13	9.78		9.78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1.13	3.14	-		5.12
비교지수	33.54	19.59	-		18.56
수익률변동성(%)	9.13	10.13	-		9.86
수수료선취-온라인(Ae)	11.90	3.79	5.94		5.93
비교지수	33.54	19.59	18.02		18.01
수익률변동성(%)	9.13	10.13	9.78		9.7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1.30	3.29	5.52		5.52
비교지수	33.54	19.59	18.02		18.01
수익률변동성(%)	9.13	10.13	9.78		9.7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연금저축))	11.41	3.40	5.60		5.60
비교지수	33.54	19.59	18.02		18.01
수익률변동성(%)	9.13	10.13	9.78		9.7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11.42	3.40	-		5.45
비교지수	37.11	21.36	-		19.23
수익률변동성(%)	9.13	10.13	-		9.99

(주 1) 비교지수: (0.9 * [MSCI_ACWI_Net_TR_USD]) + (0.1 * [CALL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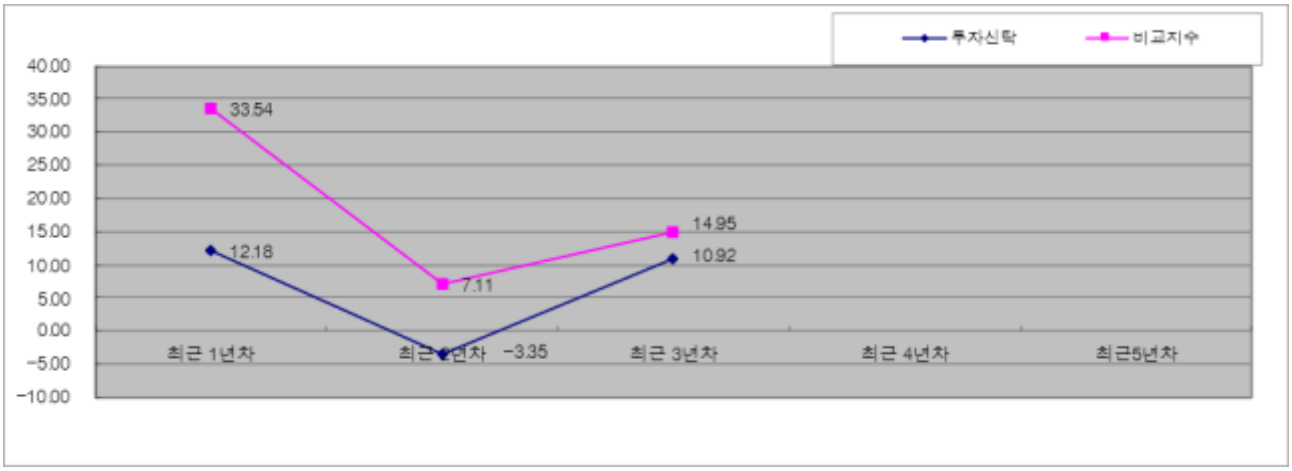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이며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5.04.21 ~ 26.04.20	24.04.21 ~ 25.04.20	23.04.21 ~ 24.04.20	23.04.20 ~ 23.04.20	-
투자신탁	12.18	-3.35	10.92		
비교지수	33.54	7.11	14.9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1.13	-4.28	9.41		
비교지수	33.54	7.11	16.34		
수수료선취-온라인(Ae)	11.90	-3.73	10.35		
비교지수	33.54	7.11	14.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1.30	-4.14	10.10		
비교지수	33.54	7.11	14.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P1e(연금저축))	11.41	-4.04	10.15		
비교지수	33.54	7.11	14.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P2e(퇴직연금))	11.42	-4.03	10.42		
비교지수	37.11	7.42	14.12		

(주 1) 비교지수: (0.9 * [MSCI_ACWI_Net_TR_USD]) + (0.1 * [CALL 금리])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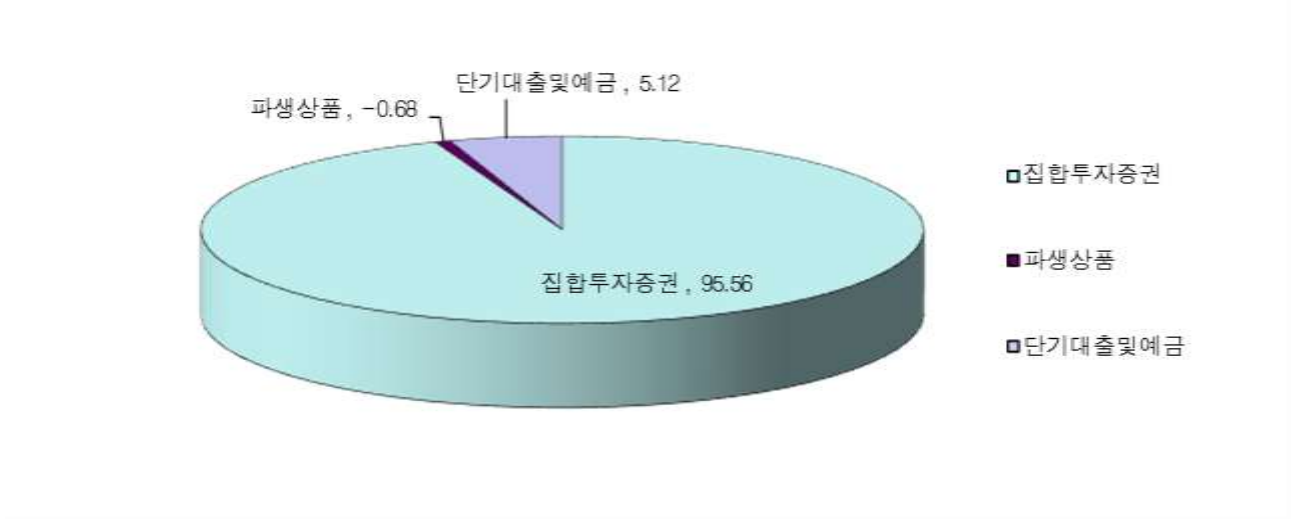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6.04.19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1	0	0	0	0	0	0	0	1
	(0.00)	(0.00)	(0.00)	(94.92)	(0.00)	(0.00)	(0.00)	(0.00)	(0.00)	(5.08)	(0.00)	(101.00)
USD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1.00)
합계	0	0	0	1	0	0	0	0	0	0	0	1
	(0.00)	(0.00)	(0.00)	(95.56)	(0.00)	-(0.68)	(0.00)	(0.00)	(0.00)	(5.12)	(0.00)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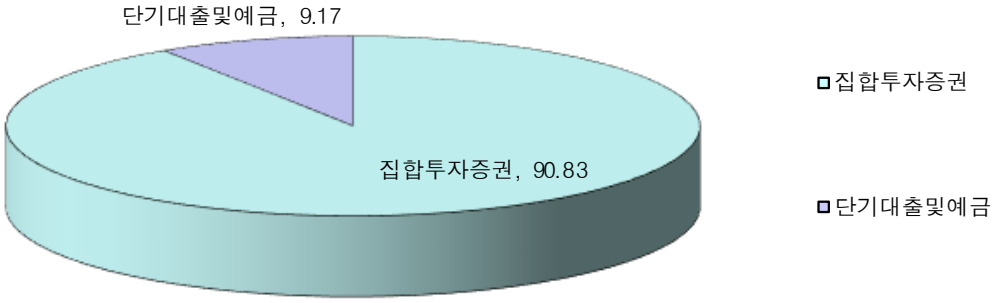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NH-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6.04.19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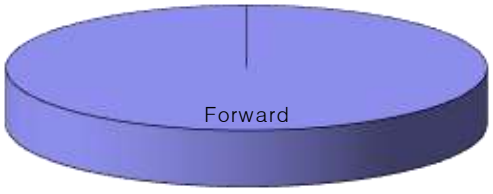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5.00)
USD	0	0	0	1	0	0	0	0	0	0	0	1
	(0.00)	(0.00)	(0.00)	(96.02)	(0.00)	(0.00)	(0.00)	(0.00)	(0.00)	(3.98)	(0.00)	(95.00)
합계	0	0	0	1	0	0	0	0	0	0	0	1
	(0.00)	(0.00)	(0.00)	(90.83)	(0.00)	(0.00)	(0.00)	(0.00)	(0.00)	(9.17)	(0.00)	(100.00)

4)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④ 국내 주식 업종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⑤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⑥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⑦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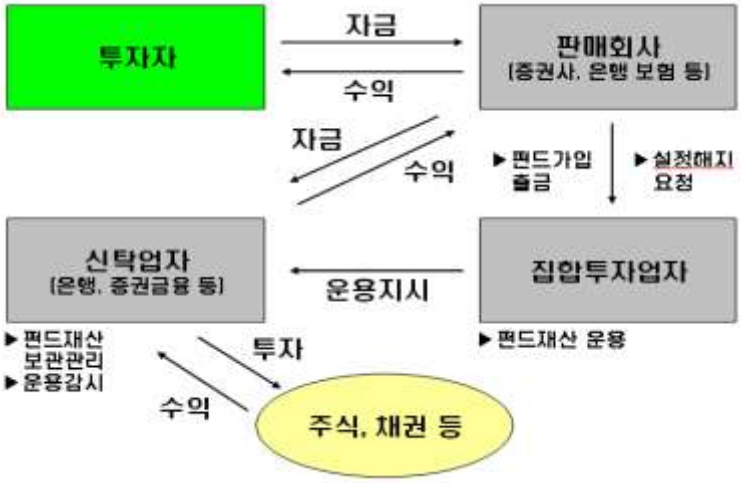
[2026.04.19 현재 / 단위 : 억원,%]

자산구분	평가액	보유비율
Forward	1	100.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NH-Amundi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 (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10층) 연락처 : 02-368-3600 (www.nh-amundi.com)	
회사연혁	2002.04	농협과 CAAM간 자산운용회사 설립에 관한 MOU체결
	2003.01	NH농협금융지주와 Amundi의 합작법인 설립
		※ Amundi : 프랑스 크레디아그리꼴(CA) 금융그룹의 자산운용 자회사, 2010. 01 CAAM에서 Amundi로 사명 변경
	2003.03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금융감독위원회)
	2003.04	영업개시 및 첫 펀드 설정
	2006.09	국내 대형 연기금 SRI펀드 운용사 선정
	2007.08	NH-CA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09.01	수탁고 10조원 돌파
	2009.06	국내최초 공모 레버리지 펀드 출시
	2010.01	'Amundi자산운용'으로 재출범 (모회사인 Credit Agricole과 Societe Generale의 자본출자)
	2010.01	"1.5배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 금융감독원 선정 2009년 '최우수 금융신상품상' 수상
	2012.03	'NH농협금융지주'로 새롭게 출범 (모회사인 농협중앙회가 7개의 금융자회사로 구성)
	2015.08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2015.10	대체투자 사업 진출
	2016.05	NH-CA자산운용㈜에서 NH-Amundi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17.07	모회사인 Amundi의 Pioneer(파이오니어) 인수 완료 : 자산규모 1,600조원의 글로벌 Top8 운용사로 발돋움
	2018.02	공무원연금공단 '사회책임투자형' 우수운용사 선정
	2018.03	HANARO ETF 출시

	2018.11	사모 헤지펀드 출시
	2018.1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019.02	KG제로인 2019 대한민국펀드어워즈 '대상' 수상
	2019.02	매일경제 2019 매경증권대상 '펀드부문 대상' 수상
	2022.01	수탁고 50조원 돌파
자본금	400억	
주요주주	농협 60%, Amundi 40%	

나. 주요 업무

(1) 집합투자업자 업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등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집합 투자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펀드파트너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25. 12말	'24. 12말	항 목	'25. 12말	'24. 12말
현금 및 예치금	87,648	75,038	영업수익	112,716	92,492
유가증권	61,516	60,411	영업비용	61,135	55,689
유형자산	1,124	1,226			
기타자산	38,570	26,297	영업이익	51,581	36,803
자산총계	188,858	162,972	영업외수익	735	712
예수부채	-	-			
기타부채	33,734	22,842	영업외비용	312	292
부채총계	33,734	22,842	법인세	12,780	7,225
자본금	40,000	40,000			
이익잉여금	115,124	100,130	당기순이익	39,224	29,998
자본총계	155,124	140,130			

라. 운용자산 규모

[2026.04.20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32,584	102,975	5,709	0	33,140	57,584	0	9,813	63,329	5,923	187,187	498,243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HSBC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 02-2004-0128)
홈페이지	www.hsbc.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02-2168-0400)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업무
- 상기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등

(2)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엔자산평가	이지자산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 현대빌딩 11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2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연락처	02-3215-1400	02-2251-1300	02-398-3900	02-721-5300	02-785-1410
설립일	2000. 6. 20.	2000. 5. 29	2000. 6. 16	2011. 6. 9	2020.6.19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www.egap.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2) 의무 및 책임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 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신탁계약서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탁계약서 제42조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 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합투자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일로 역산하여 365일 동안

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동안 보수율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수율을 적용합니다.

2. 보상기간: 365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3. 지급시기: 변경일 전일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 제222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 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제3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NH-Amundi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nh-amundi.com) 또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 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 회계감사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말일
  - 투자신탁의 해지일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서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탁계약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서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 경과시점에서 모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주1) 상기의 거래내역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최근 1년(본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부터)간의 거래내역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거래	1)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 마케팅 비용 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 등) ⑤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 7-1조의2제2항6호에 따라 고유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고유재산이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용 어 풀 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기준가 산정 통화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을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클래스별로 달리 적용하는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이자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및 추가 불입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을 유지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용 어	내 용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 BM)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 등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비교지수와는 다르게 해당 투자신탁의 단순 성과비교시 참조를 위한 것으로서, 해당 투자신탁이 반드시 참조지수와 유사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익자에게 참조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